

○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2-41호 ○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

부 누출특정기 및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누출측정기 및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누출측정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같은 법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24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	명칭	지하매설저장시설액상부누출측정기기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누출측정기기
	형식	OEL 8000 II	DPI 285
	제작사(국적)	OMNTEC(미국)	DRUCK(미국)
형식승인번호		SUSTLLM-2002-1	SUSTVLM-2002-1
형식승인년월일		2002. 5. 20	2002. 5. 20
비고		신규	신규

○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2-45호 ○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29일
국립환경연구원장

○ 규격내용 :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2 - 47호 ○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

- 번호 : 1
- 환경측정기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변경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3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개정	KSD0205	강의페라이트 및 오스테나이트 결정 입도 시험방법(현미경 관찰법)
개정	KDS0206	강의 한쪽 끝 칭에 의한 시험방법 (조미니 시험)

○ 형식승인변경

기기명칭 및 형식	형식승인번호 (년, 월, 일)	기기명칭 및 형식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골뚝배출가스자동 측정기(먼지) /DIAS-4000D	제ATMSD- 2001-14호 (2001. 9. 26)	⑪ 측정 범위	0~200 mg/m ³ 0~50 mg/m ³	0~100mg/m ³	형식승인사이면 기재 (2002. 5. 27)
		⑤ 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남 수서동 724 로즈 데일빌딩 301호 (전화 02-3414-1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151 분당 테노파크 D동 908호 (전화 031-705-8002)	

◎ **환경부광고2002-67호** ◎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수 이전에 댐상류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고, 하수관거오점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시공토록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댐건설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수 이전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시공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의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관거 오점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

3. 기타문의

환경부 하수도과장 FAX : 02-507-2450

◎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고시제2002-1호** ◎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에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고시 합니다.

2002년 5월 31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성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 변경·고시

1. 공동처리구역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대구지방환경관리

공 동 처 리 구 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m ²)	비 고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8~9번지 일원 및 파산동 710번지	136,548	지원용지가 산업용지로 변경

청 관리과 및 대구광역시청 거재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2002-11호 ⊙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국
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별표의 2002-3-2073란 다음에 2002-3-2074 내지
2002-3-210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년 5월 2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2002-3-2074	2,4-Dichloro-3,5-dinitrobenzotrifluoride [CAS No. 29091-09-6]
2002-3-2075	Terpenes and terpenoids, limonene fraction, polymers with turpentine-oil limonene fraction terpenes and turpentine-oil β -pinene fraction terpenes [CAS No. 164324-96-3]
2002-3-2076	1-Amino-4-(ethylamino)-9,10-dihydro-9,10-dioxoanthracene-2-carbonitrile [CAS No. 62570-50-7]
2002-3-2077	Octadecenyl butanedioic acid mixed esters with diethylene glycol and (tetrapropenyl)butanedioic acid, compds. with branched 3-(tridecyloxy)-1-propanamine, ethanolamine and triethanolamine [CAS No. 165445-23-8]
2002-3-2078	Octadecenyl butanedioic acid mixed esters with diethylene glycol and (tetrapropenyl)butanedioic acid, compds. with triethanolamine [CAS No. 165445-22-7]
2002-3-2079	4-Ethenylbenzenesulfonic acid ammonium salt homopolymer [CAS No. 29965-34-2]
2002-3-2080	N,N'-Dicyclohexyl-2,6-naphthalenedicarboxamide [CAS No. 153250-52-3]
2002-3-2081	2-Amino-N-(2-aminoethyl)-N-(2-hydroxyethyl)-N-methyl ethanaminium, N,N'-ditallow acyl derivs., Me sulfates (salts) [CAS No. 68153-35-5]
2002-3-2082	3,4-Dichlorobenzaldehyde [CAS No. 6287-38-3]
2002-3-2083	6'-(Cyclohexylmethylamino)-3'-methyl-2'-(phenylamino)-spiro [isobenzofuran-1(3H), 9'-(9H)xanthen]-3-one [CAS No. 55250-84-5]

2002-3-2084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ethenylbenzene, ethyl 2-propenoate and 2-propenenitrile [CAS No. 31048-35-8]
2002-3-2085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and ethenylbenzene, sodium salt [CAS No. 50885-72-8]
2002-3-2086	1,3-Diisocyanatomethylbenzene polymer with 1,3-dihydro-1,3-dioxo-5-isobenzofurancarboxylic acid [CAS No. 84043-00-5]
2002-3-2087	Formaldehyde polymer with phenol and 1,3,5-triazine-2,4,6-triamine [CAS No. 25917-04-8]
2002-3-2088	[총칭명] Pentylated cyclyl fluorated benzene
2002-3-2089	[총칭명] Propylated cyclyl fluorated benzene
2002-3-2090	[총칭명] Substituted cyclohexyl toluene
2002-3-2091	[총칭명] Ethylated cyclyl fluorated benzene
2002-3-2092	[총칭명] Substituted cyclohexyl fluorobenzene
2002-3-2093	3-[[4-(Acetylamino)phenyl]azo]-4-hydroxy-7-[[[5-hydroxy-6-(phenylazo)-7-sulfo-2-naphthalenyl]amino]carbonyl]amino]-2-naphthalenesulfonic acid, disodium salt [CAS No. 3441-14-3]
2002-3-2094	3-Methylthiazolidine-2-thione [CAS No. 1908-87-8]
2002-3-2095	Tetrabenzylthiuram disulfide [CAS No. 10591-85-2]
2002-3-2096	Decanoic acid mixed esters with dipentaerythritol, octanoic acid and valeric acid [CAS No. 68441-66-7]
2002-3-2097	[총칭명] Benzene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an(C=2-6) diols, formaldehyde, epichlorohydrin, phenol and epoxyated alkanate
2002-3-2098	[총칭명] Benzene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an(C=2-6) diols and branched alkyl(C=2-6) benzoic acid
2002-3-2099	[총칭명] Propylated cyclyl trisubstituted benzene
2002-3-2100	[총칭명] Ethylated cyclyl trisubstituted benzene
2002-3-2101	[총칭명] Pentylated cyclyl trisubstituted benzene
2002-3-2102	(Dibutylamine)bis(dibutyldithiocarbamate-S,S')zinc [CAS No. 35884-05-0]
2002-3-2103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9-nonanediol [CAS No. 73019-30-4]
2002-3-2104	Mixture of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tris(2-ethylhexanoate), 2-[(benzoyloxy)methyl]-2-ethyl-1,3-propanediol 2-ethylhexanoate, 2,2-bis-[(benzoyloxy)methyl]butyl 2-ethylhexanoate and 2-[(benzoyl oxy)methyl]-2-ethyl-1,3-propanediol dibenzoate [CAS No. 부여안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12호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2 제1항에 의한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1. 기관명 :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3. 대표자 : 박태현
4. 지정범위 : 다이옥신 측정
5. 지정조건 :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31호, 2002. 5. 15.)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항하지 않을 경우 다이옥신 측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지정



회 고

“환경인 회관건립기금 운동 전개 현황” (2002년 6월 현재)

날짜	성명	회사명	금액
01. 6	이상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100,000
	김형철	환경벤처협회장	50,000
01. 8	민영수	경서모터스 부사장	100,000
	강승진	녹색ENG 대표	100,000
	박천상	한미트레이딩 이사	100,000
	이문원	대주산업 이사	100,000
	이상기	유영산업 환경팀장	50,000
	박전수	하이트맥주 환경팀장	50,000
	황순기	표준종합환경 대표	50,000
	권영국	LG콘지암 C.C 환경팀장	20,000
	임재호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사무이사	100,000
	홍성일	태평양금속	100,000
01. 9	구현모	태평양금속	100,000
	이귀향	서울협의회장	100,000
01. 10	하용철	김스코리아 환경팀장	100,000
	김남환	정보산업환경기술연구소 원장	100,000
02. 2	조용철	환경부 공보담당관실	100,000
	이상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50,000
	이용운	환경관리연구소 회장	100,000
	장준영	거림정공 이사	100,000

날짜	성명	회사명	금액	
01. 6	유문하	세진환경 대표	100,000	
	이성호	청림환경C&D 대표	100,000	
01. 8	이정규	연합회 사무장	50,000	
	김기섭	연합회 과장	50,000	
	정경희	연합회 편집장	50,000	
	정미진	연합회 직원	50,000	
	02. 3	권영국	LG콘지암 C.C 환경팀장	30,000
	02. 4	김희열	군위농공단지 하폐수종말처리장	100,000
현오식		군위농공단지 하폐수종말처리장	20,000	
02. 5	권영국	LG콘지암 C.C	30,000	
	사무국직원		30,000	
	이상일	(주)경동보일러	30,000	
	권영국	LG콘지암 C.C	30,000	
	김영학	한일정유(주)	50,000	
02. 6	권영국	LG콘지암 C.C	30,000	
	이국두	연합회사	300,000	
	합 계		2,732,937	
총 계	결산이자 포함	117,073,462		

- '환경인회관건립기금모금운동'은 계속 전개됩니다.
- 환경인들의 숙원인 회관건립을 위해 보내주신 건립기금은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름은 동판에 기록해 영구히 보존합니다.

환경인회관건립추진위원회